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02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3.

이 영 빈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이영빈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 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,
-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평가단의 수당 등 지급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【이영빈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22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28.

발 의 자: 이영빈, 이진환, 임미연,
고명욱, 정순옥, 남현주,
김장관, 권숙자

1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수당 등 지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~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사후관리계획”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

2. 도시쇠퇴 방지 대책
3.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
4.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(평가단 구성 등)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평가단의 구성)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
2.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이 평가단원 중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,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(이하 “도시재생센터”라 한다)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단의 기능)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

평가하는 기능을 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
2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·유지에 관한 사항
3.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
4.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수당 등 지급) ① 평가단의 조사·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보고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계 법령 】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6의3. 생략

7. “도시재생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

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

- 1)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- 2)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- 3)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·사회적·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
- 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- 5)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- 6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- 7)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- 8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- 9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

사업 및 시범도시(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) 지정에 따른 사업

10)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

11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빈집정비
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

1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
1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공급에 관한 사업

14)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나.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
(이하 “혁신지구재생사업”이라 한다)

다.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
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(이하
“도시재생 인정사업”이라 한다)